

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0. 9. 3.(목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안(1646)

평 생 교 육 국

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646호)

-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6호, 「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,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.

- 서울시는 현재 「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객의 휴식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사용제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,

- 사용 제한 대상의 범위와 분류 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 함양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0. 9. 3.

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